

의안번호	2206244
의 퇴 인	최보운·서미화 의원
회 답 일	2025.2.12.
추 계 번 호	24B571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2	안 제10조(직업지도)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및 직업능력 평가 등을 실시하고, <u>그 결과를 기초로 하여 장애인 개인별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계획(이하 “개별화고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며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직업지도를 하여야 함(제1항)</u>	의무규정
		<u>개별화고용계획의 내용 및 절차,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비용 지급 및 용자·지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5항)</u>	의무규정
3	안 제43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제2항) 2.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직업능력 평가 등 직업지도 및 개별화고용계획 수립	의무규정
4	안 제75조(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등)	<u>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재활실시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요원의 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제4항 신설)</u>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 미대상 -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한 선언적 규정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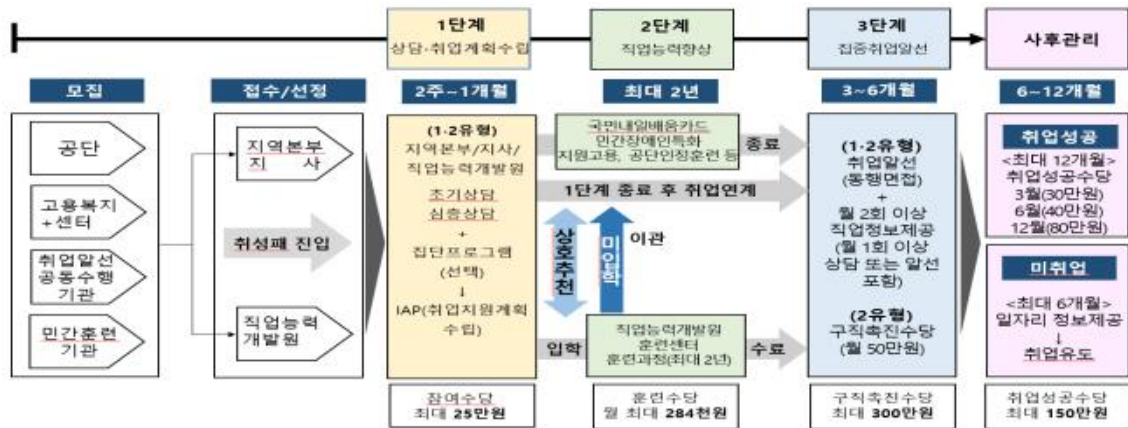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2	안 제10조(직업지도)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 참조
3	안 제43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		
4	안 제75조(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 참조

2. 상세 사유

- (안 제10조 및 제43조)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 개인별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계획(이하 “개별화고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사업에 개별화고용계획 수립 업무를 추가하고 있음
- 현재 고용노동부 및 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¹⁾ (2025년 계획액 기준 265억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에 대한 상담 및 직업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은 장애인의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사업임

1) 코드: 1452-315

[그림 1]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 추진 절차



자료: 고용노동부

- 또한 보건복지부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 6항²⁾ 및 제19조³⁾에 따라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전담인력을 두고 신청자에 대해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규모가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⁴⁾이 개별화고용계획 수립 업무를 담당할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건비(2025년 계획액 기준 745억원⁴⁾) 등의 지급 규모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음
 - 그러나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장래에 시행될 기존 사업의 확대 규모와 신규 사업의 추진 규모를 검토하고, 장래의 채용 증가 규모를 산출하여야 하지만 현시점에서 이를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안 제75조)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제2항⁵⁾에 따른 재활실시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 2) 제18조(복지서비스의 신청) ① 발달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 및 서비스(이하 "복지서비스"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를 스스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는 해당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인별 복지서비스에 관한 제공계획(이하 "개인별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줄 것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3) 제1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신청받은 경우 대상자 선정 여부 및 복지서비스 내용을 결정하여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하여야 한다.
 -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복지서비스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지서비스의 내용, 방법 등이 포함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4) 코드: 7079-120
- 5) 제9조(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② 재활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전문요원의 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재활실시기관(이하 “재활실시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 사업이나 재직 중인 전문인력 등에 대해 별도로 개발·지원하는 교육훈련 과정은 없음
 - 다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2조⁶⁾에 따른 훈련시설에 재활실시기관이 포함되어 있어 재활실시기관은 장애인훈련기관 지원 사업⁷⁾을 통해 훈련비를 지원 받을 수 있음

[표 1] 민간훈련기관 지원내용

-
- (훈련수당) 훈련참여수당 월 20만원(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시, 월 28.4만원), 훈련장려금 월 11.6만원(교
통비 5만원, 식비 6.6만원)
 - (훈련비) 직종별 기준단가(6,704원)에 따라 훈련기관 지원
-

자료: 고용노동부

- 또한 재활실시기관에 재직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과정은 없지만, 각 재활실시기관은 소관 법률에 따라 전문자격을 갖춘 인력을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각 재활실시기관에는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임

-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6.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 6)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희망·적성·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훈련 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훈련비를 포함한다)을 융자·지원할 수 있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장애인에게 훈련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융자·지원 기준 및 훈련수당의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 코드: 1457-314의 내역사업

[표 2] 재활실시기관별 자격요건

구분	근거법령	인력기준	자격요건	교육훈련
특수교육 기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	특수교육 교원	특수학교 정교사(1·2급), 일반 정교사 중 특수교육 전공자 등	국가·지자체는 특수교육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정기 교육·연수 실시 (특수교육법 제8조)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	시설장, 총무, 훈련교사등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장애인재활상담사, 기타 직업재활·특수교육 전공자 등	국가·지자체는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등을 양성·훈련하는데 노력 (장애인복지법 제71조)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	시설장, 사무국장, 직업훈련교사 등	직업재활·특수교육 전공자, 사회복지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장애인 복지단체	장애인복지법 제63조	—	보건복지부에서 단체 목적 사업 수행이 가능한 인력·시설·재산 등을 갖추었는지 개별 평가하여 설립 인가	

자료: 고용노동부

-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재활실시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요원에 대한 교육훈련과정을 개발 및 지원하기 위한 신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며, 개정안의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과정의 시행 대상과 훈련 내용 등을 확정하여야 하나, 현시점에서 이를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